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1

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 박성준·조계원·조 국

조인철 • 이기헌 • 황정아

박홍근 • 윤종군 • 허 영

허종식 • 한민수 • 백혜련

정성호 · 이훈기 · 박희승

민병덕 • 박수현 의원

(179])

#### 제안이유

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.

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 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 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,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 적·객관적·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.

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

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79조의4 신설).

### 주요내용

- 가.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및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(안 제79조의4)
  - 1)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함.
  - 2)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.
  - 3)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 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.
  - 4)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9조의4(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등)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 처는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 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에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.
  - ③ 의원은 제2항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 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79조의4(법률안에 대한 입법영
	향분석의 요구 등) ① 의원이
	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
	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
	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
	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입법
	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
	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서
	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
	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
	회 심사 전에 요구한 의원에게
	제출한다.
	③ 의원은 제2항의 입법영향분
	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
	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
	우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
	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
	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	④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
	의 요구와 제2항부터 제3항까
	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
	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

# 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